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524호

나. 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 외 23명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31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핵심 정책의 공백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(안 제3조의2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, 서울특별시 등록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 촉진과 운영을 활성화 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집행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구체화의 필요성

-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¹⁾의 개정에 의해, 2023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’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었음.

이어서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²⁾의 개정을 통해 위 의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규정이 신설되었음.

-
- 1) 제5조의3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…
- 2) 제2조의3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
 2.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
 3.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
 4. 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…

-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이 적용되는 전국 1,194개의 박물관·미술관 중, 서울시에는 181개의 박물관·미술관이 등록되어 있으며³⁾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박물관·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음⁴⁾.

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지침’이 통보되지 않아, 서울시의 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’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⁵⁾.

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’을 수립 및 시행 함에 있어, 서울시 등록 박물관·미술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< 서울시 內 박물관·미술관 현황 >

2023년 12월 기준

구 분	총 계			국립			공립			대학			사립		
	계	1종	2종	계	1종	2종	계	1종	2종	계	1종	2종	계	1종	2종
총 계	181	158	23	17	16	1	28	25	3	31	30	1	105	87	18
박물관	134	119	15	15	14	1	23	21	2	28	28	0	68	56	12
미술관	47	39	8	2	2	0	5	4	1	3	2	1	37	31	6

※ 1종 : 100㎡ 이상 전시실, 수장품 100점 이상 / 2종 : 82㎡ 이상 전시실, 수장품 60점 이상

3) 2023년 12월 기준.

4) 경기도 186개소, 서울 181개소, 강원도 119개소, 전남 103개소 순임.

5) 제2조의3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..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다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세부 수립·시행(안 제3조의2제2항)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)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 <u>시행계획</u> 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<u>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</u> 2. <u>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</u> 3. <u>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</u> 4. <u>그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
- 동 개정안은 매년 수립·시행되어야 하는 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’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하며, 이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동 개정안은 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’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핵심 정책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울시 등록 박물관·미술관 진흥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다만 위와 같은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동 개정안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하여,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·미술관의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.

전문위원	임창균(2180-8113)	입법조사관	김예영(2180-8114)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의안번호
2524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임만균 의원	2025. 3. 31.	환경수자원위원회
주요내용	〈제정 필요성〉 ○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핵심 정책의 공백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. 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 (안 제3조의2 제2항)		
추진경과	○ '25. 3. 31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		
부 서 검 토 의 건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해당 조례안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내용과 동일함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의3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.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.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. 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○ 법령의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다시 기재하는 것이나,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		
대응방안	○ 이견 없음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		
향 후 계 획			
담당부서	박물관과	팀장 박성은(☎2133-4183)	담당 정익승(☎2133-4237)